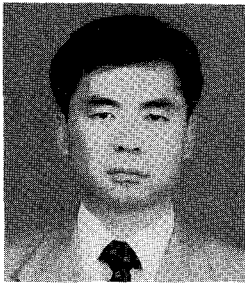




## 민간 방역 취약점 보완해야...



이 수 두

(농림부 가축방역과 수의사무관)

**가** 축질병에 대한 방역은 ①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 및 농장간 차단방역 ② 정부는 농가 개별단위로 할 수 없는 혈청검사, 전국적인 검진사업, 이동간 차단 방역, 예방약 개발 및 보급, 수출입 검역 등을 실시하며,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행정적인 처분을 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에서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추진 현황과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주요 가축질병을 청정화 하지 못하면 국내적으로는 축산업의 생산성 저하와 잦은 가축질병 발생시 소비자들에게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줄 가능성과 국제교역측면에는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해외 수출길이 막힐 뿐 아니라 위생수준이 낮은 국가들로부터의 수입 허용신청을 거부하기 곤란하여 수출입 등 축산물 통상협상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된다.

둘째로 우리나라는 중국 등 질병 발생국에 인접한 지리적 여건 및 인적·물적 교류확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국경검역 취약요인 상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및 양축농가의 해외여행 증가로 해외 바이러스 국내 유입가능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완벽한 국경검역은 어렵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유입되더라도 축사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도록 이중·삼중의 차단방역이 중요하다.

셋째로 축산농가의 자율 방역의식이 부족하며 민간 방역 활동도 미흡한 실정이다. 가축수송·사료·동물약품·분뇨 차량 및 농장주·고용인 등 사람에 대한 출입통제와 소



둘째 축산농가의 자  
율 방역의식 제고로 차  
단방역 활동을 강화가  
필요하다. 축사·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소  
독 등 방역지도 및 교  
육강화와 농가의 방역  
책임을 규정하고 축산  
관련 단체 등에서 방역  
교육을 실시하고, 축산  
농가를 질병·위생관  
리 상태에 따라 등급화  
하여 취약농가를 특별  
관리하는 방안이 강구

독이 여전히 취약하고 일부 시·군 등 지자체의  
평시 대농가 방역지도·점검기능이 미약하며,  
축협·관련협회 등 일선 민간 방역활동이 활  
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시장개방을 대비하여  
규모화·전업화로 경쟁력을 높여온 우리 축산  
업이 선진국형 축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중요한 관건으로, 악성 가  
축질병 예방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효율적인 가축방역을 위한 제도를 지속  
적으로 보완·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우선,  
농장단위 질병 및 위생관리 강화 차원에서 축  
산법을 개정하여 축산업등록제를 도입  
(’03.12)하고 개체표식 등 축종별 특성에 맞는  
추적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마  
련하고, 지난 ’02.12월에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전(’03.6월) 하위법령 조속 마련과  
민간방역요원을 확대 충원하는 등 민간 방역  
기능 활성화 유도가 필요하다.

되어야 한다. 또한 방역 우수 농가·마을에는  
방역약품 무상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하고, 일  
선 지자체·축협조합·관련협회 등 지역사회  
가 방역에 공동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나서  
도록 정부시책과 연계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  
다. 이와 더불어 방역 소홀 농가에는 보상금 차  
등지급, 사육제한 등 엄격한 제재도 반드시 필  
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3년  
에 실시하는 주요 닭질병에 대한 방역 대책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1. 뉴캐슬병 방역 대책

뉴캐슬병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가  
축전염병이며 국제수역사무국(OIE)의 List A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닭, 메추리 등 조류  
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으로 기침 등 호흡  
기 증상과, 다리·날개의 마비 등 신경증상을

보이며 폐사율이 90%에 달하는 급성 전염병으로 양계농가의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동질병은 예방접종 프로그램(肉鷄 2회, 産卵鷄 4회 이상)에 의거 철저한 예방접종과 소독 등 차단 방역을 할 경우 예방이 가능하며, 연도별 발생 동향을 보면 3~5년을 주기로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이는 백신 판매량과 반비례되고 있고, 닭고기(삼계용 백세미) 소비가 증가하는 6~8월에 밀집사육 등 계절적인 영향으로 발생이 증가하는 등 최근 연도별로는 ('00)84건 → ('01)40 → ('02)85건이 발생되었다. 해외에서도 캐나다 등 일부국가를 제외하고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 동안 뉴캐슬병 방역 추진사항으로는 「닭 뉴캐슬병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예방약 공급, 혈청검사 지원 등 단계적인 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02년에는 예방약공급을 확대하여 ('97)부화장 공급 → ('02)부화장+농장 공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03년에는 10억수분의 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양계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닭고기 수출이 필요하다라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수출농장 반경 50km 이내 뉴캐슬병 비발생을 요구하는 일본국 수입위생조건 충족을 위해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별 거점방역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관별 실천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닭고기 수출을 위한 뉴

캐슬병 방역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1) 육계농가의 예방접종 차단방역 등 소홀, 2) 발생농장의 미신고로 감염 의심닭의 유통(현 시점에서 살처분 보상금 지급시 농가의 예방접종 등 방역소홀이 우려됨) ③ 수출을 위한 뉴캐슬병 청정조건 충족지역 확보 어려우며 - 반경 50km내 90일 동안 비발생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 한정(제주도 이외 전지역 발생) - 이에 대한 세부적인 뉴캐슬병 방역관리 방안으로는 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닭뉴캐슬병 방역실시요령』(농림부 고시)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뉴캐슬병 방역요령을 정하고 아울러 방역관리 위반농가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여 난계대 전염성 질병의 관리하고 동 요령에 부합하는 “SOP”를 마련할 계획이며, 축산법 개정에 의한 종계장.부화장을 등록대상으로 전환하여 현재 관리상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② 닭고기 수출업체 중심으로 거점방역 우선 실시로서 수출농장 반경 50km이내 청정화를 위한 수출업체별 방역 프로그램을 마련.운



용하고 방역관련기관과 수출업체간 『닭뉴캐슬병 방역협의체』 구성·운영하는 등 닭고기 수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③ 질병의 예방·차단방역 관리로서는 예방접종의 면역형성을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신속한 혈청검사를 위한 방법 개선과 질병의 전파방지를 위한 소독·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④ 방역기술 개발·보급 및 교육·홍보로서는 평생 면역유도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뉴캐슬병 조기진단 키트를 개발하여 시·도 방역기관에 보급하고 관련 협의회 회원농가 및 업체 뉴캐슬병 예방접종 수시교육을 강화하고 구제역·돼지콜레라의 홍보와 병행하여 닭질병 근절 홍보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 2. 살모넬라 감염증의 예방대책

살모넬라는 다양한 형태로 전파되며 사람에게만 감염, 동물에게만 감염 및 사람과 동물에 감염 등 숙주 특이성 및 비특이성 세균으로 구분되며, 닭 등 가금에서의 살모넬라 감염증은 추백리, 가금티푸스 및 파라티푸스가 주요관리 대상으로서 파라티푸스는 사람의 식중독에 관여하고 있으며 가금파라티푸스를 일으키는 세균중 사람의 식중독에 관련하는 것으로 Salmonella enteritidis(SE)와 Sal. typhimurium(ST)이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사람 식중독에서 분리된 가금에서 유래된 살모넬라는 300여종 이상 보고되고 있다.

살모넬라 감염증은 계란을 통하여 전파가 가능한 질병으로서 양계 관련 업계(종계장·부화장·농장·닭도축장 등)가 계통적으로 체계

적인 관리가 되어야 근절이 가능한 질병이며 양계산업에서의 닭의 질병은 생산성 측면에서 추백리, 가금티푸스, 공중위생 측면에서 가금파라티푸스가 대표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닭, 오리, 칠면조 등 가금과 그 생산물(알, 고기, 가공품 등)을 통한 사람에서의 살모넬라 식중독은 공중 보건위생상 중요한 위해로 간주됨에 따라 미국내 사람의 살모넬라 식중독관련 비용은 연간 평균 10~23억\$이 집행되고 있으며 '90년대 이래 국내 발생 식품유래 식중독 중 최다로 평균 연간 32~47건이 발생되고 있다. 국내 양계 사육규모의 대형화, 집단화 및 밀집사육으로 인한 위생 및 방역의 어려움으로 최근 병아리에서 살모넬라균에 의한 피해가 증가 추세이다. 지금까지 미국 등 양계 선진국들에서도 파라티푸스의 완전 청정화를 이룩한 국가는 없는 실정이다.

방역관리 대책으로는 앞서도 언급하였으나 최근 신고가 제대로 되지않는 종계 부화업 등을 등록대상으로 전환하여 종전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등록의무 위반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변경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종계·부화장 관련 「방역·위생관리 요령」을 개정하여 종계장·부화장에 적용되는 위생·방역 관련 규정을 시대변화에 맞도록 개정하여 질병관리를 강화하고, 삼계용병아리(백세미)생산업을 축산법령에 의한 등록대상 가축사육업으로 정하여 위생·방역 강화할 계획이다.

표1. 질병 발생 현황

구 분	2000	2001	2002
추백리	-	4건/20천수	5건/2천수
가금티푸스	79건/725천수	121건/735천수	144건/1,835천수

이와 더불어 추백리 등 살모넬라감염증에 대한 검진사업을 개선하여 추백리방역실시요령에 변화된 농장 환경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사육농장에서 살모넬라감염증이 발생될 경우 분양 종계·부화장을 추적하여 발생원 농장을 색출하는 방법과 농가가 자체적으로 하는 검사를 효과적으로 검진하기 위하여 협회 등이 참여하는 검진팀을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3. 가금인플루엔자 방역

가금인플루엔자는 조류(鳥類)에 감염되는 바이러스 질병으로 감염형태에 따라 폐사, 산란저하(産卵低下) 등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며, 혈청형태(Sero Type)에 따라 고병원성, 약병원성, 비병원성으로 분류되고 총 135종(H형 15개, N형9개)이 있으며,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질병은 약병원성으로 발생시 부분적인 폐사와 산란율이 40~50% 떨어진후 2주가 지나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다.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HPAI)만 List A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인플루엔자는 호주, 미국, 이태리 등 선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야생조류 방역문제로 근절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영국 등 국가는 비발생국이며, 사람과 마찬가지로 혈청형이 다양하여 효과적인 예방약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국내에서는 '96년도 경기 화성, 전북 정읍, 경북 김천에서 약병원성(H9N2) 가금인플루

엔자가 최초로 발생하였으며, '97~'98까지 발생이 없다가 '99년도에 13건, '02년에는 경기(포천, 화성, 시흥), 강원(양양), 충남(연기), 경북(김천)에서 6건이 발생되었다. '99년이후 재발생이 된 이유는야외바이러스가 잠복기에 있다가 난좌(卵座) 반복사용, 겨울철 닭 수송차(어리장)세척·소독 소홀 등 차단방역 소홀로 재발생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동안 가금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으로서는 '96년 최초 발생시 전두수(98천수) 살처분, 종란(1,066개) 매몰조치와 '98.11 국제기준에 의한 “가금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을 제정하여 약병원성 인플루엔자에 대하여는 축사소독, 이동제한, 종란의 이용금지, 부화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질병에 대한 검사는 '97~'98까지 종계장을 대상으로 5~10천건을 실시하였으며, '02년에는 사육닭에 대하여 32,614건의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닭 질병에 대한 방역관리에서 정부의 역할은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닭사육 농가에서 자신의 재산은 자신이 지킨다는 의지와 실천이 질병관리에 가장 중요하며, 질병은 발생후 조치보다는 근본적으로 예방에 중점을 둔 관리가 되어야 하겠다. 일부농가에서 질병발생이 없다고 하여 예방접종에 소홀히 하여 다시 질병이 발생하는 예를 주변에서 볼 수 있다. 이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과 같이 질병에 대비를 하지 아니하고 요행을 바라고 닭을 사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겠다. 앞으로 철저한 예방접종과 차단방역만이 질병발생을 막을 수 있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 **양계**